

2016년 연차수당, 하계휴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

2016.01.01~2016.12.31

1. 기관현원 : 116명 (2016.12.31 기준)
2. 연차 보상금 지급인원 : 0명
3. 2번 중 근로기준법 61조 1호에 따른(서면촉구) 인원수 : 116명
4. 2번 중 근로기준법 61조 2호에 따른(서면통보) 인원수 : 116명
5. 기관의 미사용 연차일수 총합 : 187.5일
6. 기관의 연차보상금 총액(지급 총액) : 0원
 - * 인건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, 세부내역에 연차보상금 항목이 배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, 제2호의 조치를 취함
- 6-1.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관련 규정/내규 : 없음
 - * 연차보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, 제2호를 준용하여 조치
7. 최대 미사용 연차일수 현황(미사용 연차일수 기준)

	미사용연차일수	직급	수령액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11.5	책임급	-

8. 최대 연차보상금 수령 현황(금액 기준)

	연차보상금 수령액	직급	미사용연차일수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-	-	-

9. 연차 이외, 하계휴가 제공여부

	하계휴가 제공	기간	일자	근거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미제공	-	-	-

10. 근로기준법 제62조(유급휴가의 대체) 적용여부

	유급휴가의 대체	기간	일자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미사용	-	-

11. 최근 2014~2016년 노사단체협상을 통해 노조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 및 유급휴가의 대체를 요구한 경우,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제도	요구여부	일자	내용
	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	X	-	-
	유급휴가의 대체	X	-	-

12. 근로기준법 제57조(보상휴가제) 적용여부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보상휴가제	적용대상자	적용대상일자
	미사용	X	-